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2월 5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새 정부 ‘일자리 창출’, ‘경제 활성화’, ‘국민안전 강화’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 - 총 정 원 : 3,378명 → 3,481명 (+103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574명 → 1,607명 (+33)
 - 소방공무원 정원 : 1,691명 → 1,761명 (+70)
- 정원조정 내역 (안 별표 3)
 - 일반직 : 1,448명 → 1,479명 (+31명)
 - ▶ 4급(+1명), 5급이하(+30명)
 - 연구직 : 157명 → 159명 (+2명)

- ▶ 연구사(+2명)
- 소방직 : 1,691명 → 1,761명 (+70명)
- ▶ 소방령이하(+70명)

5. 검토의견

- 위 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‘일자리 창출’, ‘경제 활성화’, ‘국민안전 강화’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집행기관의 정원을 33명 증원(4급 1명, 5급 이하 30명)하고, 소방공무원 정원을 70명(소방령 이하) 증원하는 것임.
- 이번 정원 증원은 대부분 기준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, 일자리 부서 인력 보강, 소방인력 보강 등 현장행정 중심의 새로 신설되는 과의 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 다만 기준인건비가 반영이 되지 않은 인력 증원과 도정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증원의 경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